|  |  |  |
| --- | --- | --- |
|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국가세무총국 령 제27호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을 아래와 같이 반포하므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肖捷  2011년 12월 19일  국가세무총국은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한 개 조항을 증가하여 제6조로 한다. 즉, “중고차를 구입할 때 구매자는 차주로부터 《차량구입세 과세증명》(이하 과세증명이라 함)을 요구해야 한다.  “차량구입세 면세수속을 처리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 또는 면세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제13조를 제14조로 개정한다. 즉,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수속을 처리할 때 고정 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은 차량 실태를 검사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3. 제14조를 제15조로 개정한다. 즉,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서류를 심사하고 과세기준을 확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증명을 발급한다. 과세차량은 과세증명의 세금징수 난에 차량구입세 징수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면세차량은 과세증명의 면세 난에 차량구입세 면세 전용인장을 날인한다."로 개정한다.  4. 제39조를 제40조로 개정한다. 즉,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 수속을 처리한 차량에 대해 차량구입세 징수관리 보존서류를 설치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5. 제41조부터 제46조는 삭제한다.  6. 제48조를 제43조로 개정한다. 즉, “납세신고서, 면세신청서, 증명 보완신청서, 세금환급신청서의 양식, 규격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자체로 인쇄 사용한다.”  7. 별첨 5와 별첨 6은 삭제한다.  이 결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개정을 실시하고 조문 순서를 조정하여 다시 공포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车辆**  **购置税征收管理办法》的决定**  国家税务总局令第27号  　　现将《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的决定》予以发布，自2012年1月1日起施行。  　　 国家税务总局局长：肖捷  二○一一年十二月十九日  　　国家税务总局决定对《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作如下修改：  　　一、增加一条，作为第六条：“购买二手车时，购买者应当向原车主索要《车辆购置税完税证明》（以下简称完税证明）。  “购买已经办理车辆购置税免税手续的二手车，购买者应当到税务机关重新办理申报缴税或免税手续。未按规定办理的，按征管法的规定处理。”  　　二、第十三条改为第十四条，修改为：“主管税务机关在为纳税人办理纳税申报手续时，对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应当实地验车。”  　　三、第十四条改为第十五条，修改为：“主管税务机关应对纳税申报资料进行审核，确定计税依据，征收税款，核发完税证明。征税车辆在完税证明征税栏加盖车购税征税专用章，免税车辆在完税证明免税栏加盖车购税征税专用章。”  　　四、第三十九条改为第四十条，修改为：“主管税务机关应当对已经办理纳税申报的车辆建立车辆购置税征收管理档案。”  　　五、删去第四十一条至第四十六条。  　　六、第四十八条改为第四十三条，修改为：“纳税申报表、免税申请表、补证申请表、退税申请表的样式、规格由国家税务总局统一规定，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自行印制使用。”  　　七、删去附件5和附件6。  　　本决定自2012年1月1日起施行。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根据本决定作相应的修改并对条文顺序作相应调整，重新公布。 |